

제 4차 ISO 환경경영 기술위원회 환경라벨링 분과 국제회의,

(IOS TC207 Enviromental Label/Declaration) 서울 회의
(The 4th meeting in SEOUL, KOREA) 참석 결과

박 룡 / 환경보전협회 ISO 14000 TFT

1993

년부터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ISO 14000 국제환경표준화는 이제 논의 단계를 벗어나 실행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1996년 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환경경영표준 (I.E.M.S=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인 ISO 14001 EMS System의 공포를 앞두고 좀더 강하게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멀게만 느껴지던 환경경영체제는 지난 12월에 40여개 기업이 지정된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ISO 14000시리즈중에서 현재까지 빨리 완료되었고 유일한 표준(Standard)이라 할수 있는 환경경영체제(EMS)만을 국제환경규격의 전부로 오인하거나 또는 다른 국제환경경영분과를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커다란 우를 범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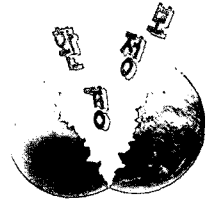
그러한 의미에서 5개 주요 ISO 14000 시리즈중 SC3 환경라벨링 분야는 환경경영체제 못지않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규격을 준수치 못할경우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EMS 못지않은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환경라벨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 제도와 같이 상품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업의 자기주장(Self Declaration)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 내용을 쉽게 풀어 말하면 기업이 환경적으로 (타사에비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모든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모든 광고, 기업의 브로슈어, 홍보영화, 기업 이미지 메이킹,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기주장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고 실행되면 그동안 사용하여 왔던 "그린"이나 "재활용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등의 애매모호하거나 입증되지 않는 모든 기업의 주장은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홍보 실태로 볼때 많은 타격을 줄수 있다.

현재 ISO 14000 환경라벨링 분야에서는 상품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Product)은 물론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까지도 포함하는 PPMs(Procee & Product Methords)와 원료투입에서 최종 폐기까지의 전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까지 고려하여 규정으로 할 것을 추진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따라서 EMS가 환경경영체제 규격을 규정한 표준(System Standard)이라면, 환경라벨링은 실제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와 전과정을 고려한 실증 평가, 분석(Actual Analysis)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규정이 될 전망이며, 또한 기업과 소비자 및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상 제품에 관한 규정이 됨으로서 그 파급효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ISO TC207 SC3 환경라벨링 분과 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19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진청,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주관으로 본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1995년 5월의 오슬로 회의에 이은 4번째 환경라벨링 분과위원회(ISO TC207 SC3)총회로서 20여개국 73명이 참가하여 총회와 아울러 3개 작업반(Working Group)별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초안(CD=Committee Draft) CD 14020, 14021등이 논의되었는데, 회의의 주요 흐름은 환경라벨링 기준을 보다 강하게 만들려는 국가(주로 유럽국가들)와 이를 저지하려는 측(주로 개발도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등)과의 대립과 논의라고 볼수 있다.

아울러 다음 5차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

□ 회의명 : 제4차 ISO 14000 환경경영 기술위원회 제3분과 국제회의

- 장소 : 서울 프라자 호텔 (22층 덕수홀)
- 주관 : 공업진흥청
- 주최 : 한국품질인증협회

- 후원 : 환경보전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 참가자 : 외국인 - 19개국 60명 내국인 - 13명

□ 회의 진행상황 :

☞ 제1작업반 회의 (1995.11.25-26)

▷ 논의내용 :

1. 환경라벨링 제도의 상호인증원칙
2. 환경라벨 부여기준

▷ 논의결과 :

1. 95년 3월에 CD화가 부결된 WD 14024 N43에 대해 작업반내 3개 전문 그룹(Task Group) 나누어 CD화를 다시 논의하였으나 독일측의 반대로 1995년 6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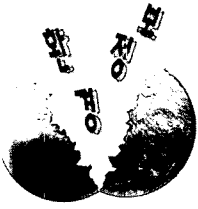
2. 제3자인증(Type 1 program) 원칙

"Type 1 program이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여러 인증기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선정된 범주내의 환경성평가에 의해 라벨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이다"

3.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전과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영향의 대상에 당초 "소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타"로 변경됨(아직 소음은 대기, 수질과 동등한 변수로 하기에는 공감할 얻지못함)

4. Environmental Attributes가 Environmental Aspect로 변경

ISO EMS에서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는자, 향후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에 조직기준을 EMS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 효과를 내게되는데 이는 당초 환경라벨링 제도는 Product와 Service에 해당하는 분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이같이 용어가 변경됨으로서 향후 제품 및 EMS 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



☞ 제2작업반(1995.11.27-28)

▷ 논의내용 :

1. 환경라벨링의 심볼
2. 환경우수성 주장

▷ 논의결과 :

I. 환경성 자기 주장 관련 '용어 및 정의'의 국제규격(ISO 14024)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29일까지 CD로 확정키 위한 투표표 실시함. (대체적으로 안이 확정됨)

II. 환경 심볼이 왜 중요한가?

환경 심볼(피비우스 루프:3개의 화살이 서로 꿈무늬를 쫓는 모양의 심볼을 '재활용'을 뜻하는 표시로 사용하자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은 제조자가 볼 때 환경심볼의 사용으로 긍정적 효과 -매출의 증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임.

문제는 전세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될 이같은 환경심볼(피비우스 루프)의 사용은 그 심볼을 사용하는데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이다. 즉, "재활용 가능한 제도적 여건 예를 들어 住民의 일정부분 -합리적 비율- 이 채수집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환경심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업계의 사전 노력이 요청된다.

☞ 환경관련 국제규격은 각국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이를 자국의 구매요건에 추가한다거나 자국의 14000기준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KS 14000- 으로 채택할 경우 이같은 규정이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될 국제규격이 사실상 강제적인 규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III. 현재의 환경 심볼 -피비우스 루프- 이외의 다양한 심볼에 대한 표준화 논의는 WG2의 (규정된) 업무 영역 /job description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Task Group를 만들어 사전에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작업방향을 결정키로 함.

☞ '95.12.5.에 개최될 CAG(Chairman's Advisory Group)회의에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환경심볼을 표준화하자는 신규작업을 요청하기로 함.

IV. 환경우수성 자기 주장과 관련한 입증방법론 (Verification Methodology) -환경 우수성 주장을 할 경우 과학적이고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증방법론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이 안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환경성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임.- 에 대한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해서는 日本의 環境經營協會 (Japan Environmental Management Association for Industry: JEMAI)가 시안한 문서를 우선 논의거리로 삼아 검토하기로 함.

☞ 입증방법론에 대해서는 향후 'ISO 14023'으로 탄생될 것임. 그리고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ISO 14023'으로 탄생될 것임. 그리고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ISO 14022, 환경심볼'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고 나서 논의키로 함 (관련 문서 :ISO/TC 207/SC3/WG2 N 121 총19쪽)

☞ 제3작업반(1995.11.30 -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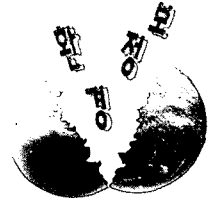
▷ 논의 내용

1. 환경라벨 및 기업의 자기주장에 관한 일반원칙
2. 무역에 있어서 환경라벨의 상호인증

▷ 논의 결과

I.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에 대한 논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강력히 의견제시를 했으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럽측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못함(상호인정 문제는 당초 案에서 7번째로 제기된 무역문제를 다루면서 제기된 것임)

☞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는 WG3에서 다루지 말고



WG1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WG1으로 넘기기로 함. 따라서 완전 결론 난 것은 아님(이유: WG1은 제3자가 인증해 주는 절차, 방법 등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 예, 환경마크의 부여- 상호인증 문제는 바로 이같은 점에서 WG1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이에 대해 '96.3에 개최될 Washington D.C. 회의에서 논의 하고 제5차 SC3 총회('96.6 개최예정)에서 정식으로 WG1으로 넘기기로 함.

5. 향후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ing)이라는 용어는 환경라벨과 주장(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으로 개정하여 사용한다.

6. CD 14024(제3자 인증 원칙)는 3개월의 각국 검토를 받아 1996년 6월 남아프리카의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Ⅱ. 환경라벨링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제7원칙과 관련하여 초안에 있던 예외 조항, 즉 환경문제를 이유로 무역제한을 가할 수 있는 4가지 예에 대해 이를 모두 삭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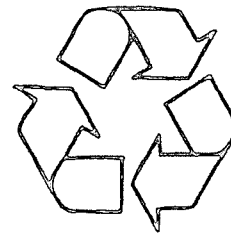
즉, 제7원칙은 좋다고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문장은 삭제되고 다음 문장으로 대체됨: Trade barriers is best avoided if the same code of conduct is called for all types of eco-labelling (Type I, II and III). A reference can be made to this code of conduct and to international trade rules/동일한 무역장벽 관련 실행지침이 모든 유형의 환경라벨링(타입 I, II 및 III)에 해당된다면 무역장벽은 우선 피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관련 참고 예시가 이같은 실행지침 및 국제무역에 대해 만들어 질 수 있다.

☞ 환경라벨링 위원회 총회(1995.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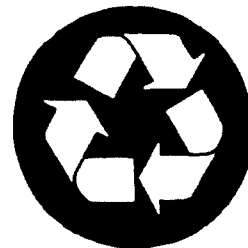
▷ 의결 사항

1. 노르웨이 오슬로에서의 회의결과를 최종승인
2. 환경자기주장 라벨(type 3)에 관한 새로운 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시작한다. (의장은 스웨덴에서 하도록 하고 담당 작업반은 제1작업반으로 한다)
3. CAG(국제 기술 자문그룹)과 SC3 위원회간의 회의를 승인한다. 두 기관은 빠른 시간안에 협의를 개시할 것.
4. 1996년 3월 이전까지 CD 14020에 대한 각국의 코멘트를 받도록 WG3는 CD 14020을 결정한다.

<그림> 되비우스 루프 (ISO 환경마크 표식)



Recyclable
Figure 1



Recycled Content
Figure 2